

- 2016년도 강북구청 -
공무원단체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

(생명 · 상해, 특정질병진단, 입원의료비 보장보험)

I 보험계약 일반사항

개 요

- 계약기간 : 2016. 2. 16.(화)00:00 ~ 2017. 2. 15.(수)24:00
- 가입대상 : 맞춤형복지 적용대상 공무원(총 1,287명)('16. 1. 4. 기준)
- 구 성
 - 질병·육아가사휴직자 등을 포함하여, 소속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
 - 대상 총인원 : **1,287명** (시간선택제임가제, 청경, 구의원, 공무직 포함)

총인원	남 자		여 자		비고
	인원수	평균연령	인원수	평균연령	
1,287명	738명	47세	549명	40세	

※ 단체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인수거부(가입제한) 없으며, 인원수 및 가입자수는 바뀔 수 있음

- **보장범위** : 업무중업무외(사생활)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, 계약기간까지 보장
- **보험료 적용** : 선택(안)별 평균연령 적용 남녀 분리단가 보험료
- **입찰공고의 추정가격**은 평균연령 보험료를 적용한 남녀분리단가를 추정하여 산출된 금액이며, 추후 직원들 선택 변동에 따라 우리구가 납부할 총 보험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
- **보험료 납부** : 보험업감독규정 제4-33조 5항에 의거 정부(지방자치단체도 포함)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음

● **가입 변경자 계약사항**

- 가입자 신규, 해지, 근무처 변경 등 통보 : 수시
- 보험효력 발생일 : 인사발령일자
- 보험료 정산 : 인사발령일(신규, 전입, 전출, 퇴직)을 기준으로 소급(일할) 정산
 - 신규발령 및 전입자는 발령일자로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, 전출 및 퇴직자는 발령일자로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을 해지하며,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납입 및 환급 등은 '17년도 계약종료 후에 일괄정산
-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처리 : 희망직원에 한하여 중복가입하되, 미희망직원은 계약 기간 이내라도 원하는 시기에 부분해지 가능

계 약

-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와 보험가입인원 확정시 체결
- 낙찰자 선정방법은 총액이 최저가인 업체로 선정

II 보장보험 제안내용

보장내용

구 분	2016년 보장한도액		비 고
	남 · 여 공통		
생명 · 상해	7,000만원 한도		2015년 보장대비 2,000만원 증액 (후유장해 : 등급별 보상)
특정질병진단	암, 급성심근경색, 뇌졸중 진단 시 최대 1,000만원 한도		2015년 보장대비 동일
입원의료비	1회 입원당 최대 1,000만원 한도		2015년 보장대비 동일

보장범위

1 생명 · 상해 보장보험

- **보장범위 및 내용**
 - 질병사망(질병장해80%이상포함) 및 재해사망,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따른 재해장해 보장

-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, 현증자 보상 포함
-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발생시 중복 보상
-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
-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

● **지급제한(면책사항)**

- 계약자, 피보험자,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전쟁, 기타 변란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

2 특정질병진단 보장보험

● **보장범위 및 내용**

- 암, 급성심근경색, 뇌졸중 진단 확정 시 : 각 1,000만원
- 갑상샘암, 경계성 종양 진단 확정 시 : 300만원 이상
- 기타피부암, 상피내암 진단 확정 시 : 100만원
-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
- 암, 급성심근경색, 뇌졸중 관련 면책기간 : 없음
(계약기간 내 암진단 및 급성심근경색 확정 시 면책기간에 관계없이 보장)

3 입원의료비 보장보험

● **보장범위 및 내용**

-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부분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상(단,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%와 비급여의 나머지 8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함)
- 입원의료비(상해 및 질병 입원시) 1천만원 한도(각각의 상해 및 질병 당 한도임)
-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(감독관청규정에 따름)
- 동일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횟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 보상
- 피보험자가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중인 입원에

대하여 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(단,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한 180일 산정)

- 모든 **법정비급여 보상** : CT, MRI, MRA, 초음파, 선택진료료, 식대
-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**기준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50%** 공제 후 보상(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
-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**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%**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, 질병 당 1,000만원 한도로 보상
-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를 포함),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. (단, 불임검사, 불임수술, 인공수정, 양수 검사,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)
- **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**

● **지급제한(면책사항)**

-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질환
- 단순 코골음,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
- 계약자, 피보험자,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으로 인한 상해입원 시
-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 사고(방사선 조사, 오염 포함)로 인한 상해입원 시
- ****- *전문등반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으로 인한 상해입원 시
- ****- *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, 연습, 시운전으로 인한 상해입원 시
- ****- *선박승무원, 어공, 사공,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입원 시
- 외과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
- 알콜중독,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
- 영양제, 종합비타민제, 호르몬 투여, 보신용 투약,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, 불임검사, 불임수술, 불임복원술, 보조생식술 등에

소요된 비용

- 의치, 의수족, 의안, 안경, 콘택트 렌즈, 보청기,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, 대체 및 수선비용
-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, 보신용 한약재, 고단위 영양제 투여,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
- 인공수정, 치과의 보철(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)
-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, 선천성 뇌질환, 비만, 비뇨기계 장애
- 직장 또는 향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
- 자동차보험(공제를 포함)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. 단, 본인부담의료비는 상기 입원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에 따라 보상
-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

III 입찰참가자격

-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생명보험업(생명보험), 손해보험업(기타보험) 면허를 겸유하고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(공제포함)업을 영위하는 업체중 2016년 1월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% 이상 업체(단,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 검사결과 문책경고업체 제외)
-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하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제출
- 분담이행방식 가능 - 2개 업체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대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참여인력 가운데 서비스 공급 총괄 관리책임 등을 비롯한 50%이상의 인력을 대표업체에서 맡아야 함
- 계약 시 공동수급체간 협정서 제출(분담이행방식)

단체보험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보험사를 선정하고,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우리구와의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와 처리

- 보험회사는 본사조직만 계약 가능(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, 보험사 임직원에 한함)

N 기타사항

-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
- 계약체결 시 감독관청 인가서류 제출 (보험약관, 사업방법서,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)
- 입찰보험료는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각 선택안 별로 작성제출
 - 생명·상해 보장보험, 특정질병(암, 급성심근경색)진단 보장보험, 입원의료비 보장보험으로 구분 제출
- 2016년 단체보장보험 서비스공급자 계약 체결전이라도 보험개시일 (2016. 2. 16. 00:00)부터 보험효력 소급 발생
- 보험사(계약업체)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짐
-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찰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